

# 디아크리온강남(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주거약자용]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5.30.)

1. 건설위치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1길 11(자곡동) 행복주택 199호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5.30.(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디아크리온강남(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총 597호로 공공분양(398호)과 행복주택(199호) 혼합단지입니다.
- 디아크리온강남(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5.30.)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주거약자)]

- ※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조건을 충족하고 **주거약자**인 사람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2018.5.31. 이후 출생)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2018.5.31.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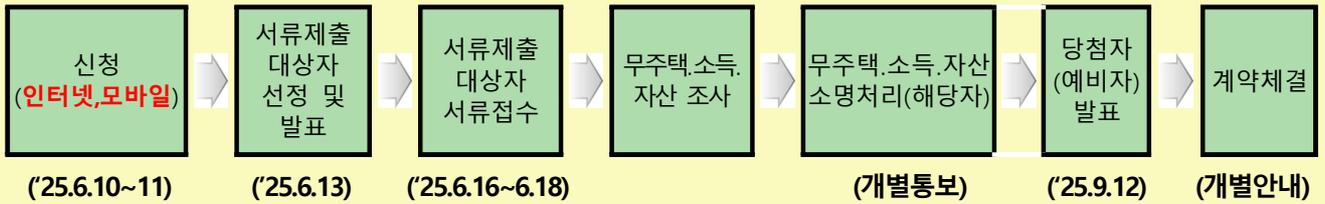
## 주거약자

-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1960.5.30. 이전 출생))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로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 호수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sup>2</sup> )					기본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기존 예비자	금회 모집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55B-1	신혼부부	10	0	10	55.97	30.8034	8.9305	54.6868	150.3907	215,200	10,775	204,425	753,200	(+)77,000	292,200	304,030	10~ 14	철근 콘크리트 / 지역 난방
														(-)184,000	31,200	1,289,860		
55C-1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6	0	10	55.77	30.6934	8.8986	54.4914	149.8534	214,400	10,720	203,680	750,400	(+)77,000	291,400	301,230		
														(-)183,000	31,400	1,284,150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세대구성원)가 있는자(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공급형별·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입주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디아크리온강남(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 세대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팬트리 - 드레스룸/ 침실2 - 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디아크리온강남(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 세대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 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주거약자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5.30.) 현재,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주거약자에 해당 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 주거약자

-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1960.5.30. 이전 출생))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①-㉓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㉕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가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371,000,000원	41,83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45,63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45,63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11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3인	0인	110%	371,000,000원	41,830,000원
			1인	100%	337,000,000원	38,03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45,63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45,630,000원
	○	2인	0인	130%	337,000,000원	38,030,000원
			1인	120%	337,000,000원	38,030,000원
		3인	0인	130%	371,000,000원	41,830,000원
			1인	120%	337,000,000원	38,030,000원
			2인 이상	130%	371,000,000원	41,830,000원
			2인 이상	140%	405,000,000원	45,63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7,120,104원 이하	7,667,8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9,915,065원 이하	10,677,762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11,151,514원 이하	12,009,323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11,740,362원 이하	12,643,467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12,653,012원 이하	13,626,320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 본인</li> <li>신청자 배우자</li> </ul>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 직계존속</li> <li>신청자 직계비속</li> <li>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li> <li>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li> <li>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기준도 위와 동일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p>[인터넷(PC·모바일) 접수]</p> <p>'25.6.10.(화) 10:00~ '25.6.11.(수) 17:00</p> <p>※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p> <p>[현장대행접수]</p> <p>'25.6.10.(화) 10:00~17:00~ '25.6.11.(수) 10:00~17:00</p> <p>-접수처 :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불가</p>	<p>'25.6.13.(금) 17:00 이후</p> <p>(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p>	<p>'25.6.16.(월)~6.18.(수)</p> <p>[등기우편 제출]</p> <p>우편접수장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앞(우:06162) ※ '25.6.18.(수)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p>	<p>'25.9.12.(금) 17:00 이후</p> <p>[예정]</p> <p>(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ARS(1661-7700)</p> <p>※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별도게시</p>	<p><b>개별안내</b></p>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로 도와드립니다.  
(현장대행접수 시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으며, 대기좌석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이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합니다.

###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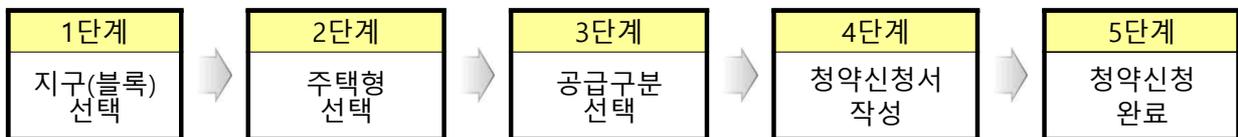
###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6.10(화) 10:00시부터 '25.6.11.(수)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6.10(화) 10:00시부터 '25.6.11.(수)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인터넷대행)접수 신청방법(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방문 접수장소 :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25.6.10.(화) 10:00~17:00 ~'25.6.11.(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방문신청 시 유의사항
  - 방문(인터넷대행)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므로 혼잡한 오전시간을 피하시고 오후시간에 내방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요건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실 형별을 선택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방문 접수기간에만 본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거약자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인터넷대행접수**로 도와드립니다. (서류미비시 신청 불가)
  - 방문(인터넷대행)접수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방문(인터넷대행)접수 신청자 추가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5.6.13.(금) 17:00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5.6.16.(월)~25.6.18.(수)]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5.6.18.(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방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앞 (우:06162)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5.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양식1]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양식2]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양식4]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b>해당자만 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b>해당자만 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li> <li>·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li> <li>·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li> <li>·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b>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b></li> <li>※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li> <li>· 신청인 <b>본인기준으로 발급</b>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li> </ul>	1통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b>해당자만 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li> </ul>	1통
임신진단서 <b>해당자만 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li> <li>&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li> </ul>	1통
입양관계증명서 <b>해당자만 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li> </ul>	1통

■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b>상세증명서</b> 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b>[양식5]</b>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제출 <b>[양식5]</b>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b>상세증명서</b> 로 발급)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증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주거약자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국가보훈부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국가보훈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보훈부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당첨/낙첨결과조회))

### ■ 계약안내(개별통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LH 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or ARS(1661-7700) → 3번(예비입주자 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LH청약플러스(예비입주자 개인정보 변경)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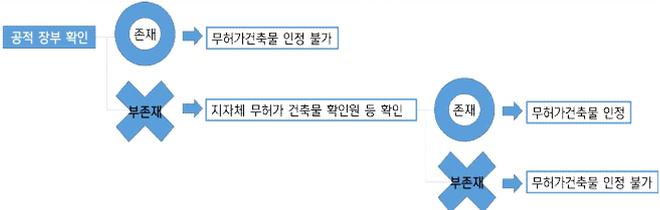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참고) 무허가건축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b>금융 자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 예수금 : 잔액</li> <li>•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b>기타 자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b>부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li> <li>•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b>자동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b>■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입주자격</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li> <li>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li> </ul> <p><b>■ 재청약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li> </ul>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예비입주자	<p><b>■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li> </ul>				
갱신계약 등	<p><b>■ 갱신계약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li> <li>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li> <li>*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ul> </li> </ul> <p><b>■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li> <li>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li> </ul>				

	<p>*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p> <table border="1" data-bbox="296 309 1469 517">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li> <li>•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li> <li>•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li> </ul>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li> <li>•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li> <li>*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li> </ul>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b>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b></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LH청약플러스(예비입주자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li> </ul>														
지구 및 단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당해 단지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는 공공분양(398호), 행복주택(199호) 혼합단지입니다. 주택단지 관리주체가 LH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될 예정이오니 의사결정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b>지구 여건</b></li> <li>•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음</li> <li>•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li> </ul>														

- 지구 내 학교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남측으로 자곡로, 서측으로 밤고개로가 인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저소음포장을 계획하고 있음
- 청약 전에 해당 사업지구를 반드시 방문(현장 출입 불가)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남측 약 3km에 서울공항이 있으며,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동측에 연접하여 서울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가 있으며, 차량정비에 따른 생활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지구 내 환승센터부지에 지구 내외의 빗물의 배제를 위한 유수지가 운영되고 있음
- 지구 내 근린공원에는 지중에 운영중인 SRT의 환기구, 전기시설, 통로, 화물용E/V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계획노선인 수서-광주선의 건설사업과정에서도 추가로 철도시설물이 지상에 노출될 수 있음
- 근린공원 내에는 지중SRT 전기시설, 환기구, 화물용E/V 등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음
- 경관녹지에는 조성과정에서 보행자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개방된 단지구현을 위해 방음벽이 없음

#### ■ 단지 여건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같은 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음
- 커뮤니티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단지의 동측, 서측, 남측의 경계담장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전체동 지상1층은 필로티 또는 상가로 시공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01동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1대당 사용하는 세대, 라인 수가 다름
- 301동은 복도형이며 층당 최대 45호이며, 301동 모든 세대가 각층 복도 전체를 통행할 수 있으며 각 세대 전면 복도는 공용부위임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열교환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동은 발전기, 펌프 등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상과 연결되는 지하주차장 1층(및 출입구)의 층고는 2.7m로, 지하주차장 2층의 층고는 2.3m로 계획되었음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1~2층 719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4대이며, 총 723대 중 23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임(장애인 주차대수 동별로 상이함)
- 301동은 전세대 복도형이며, 302동, 303동, 304동, 305동, 306동, 307동, 308동은 계단실형 구조임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대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무인택배보관함은 301동, 304동, 308동에만 설치될 예정임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됨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라인은 승강기에 인접하여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46B, 55A타입은 주방창호 및 거실창호가 호 라인에 따라 달라짐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대피공간의 경우, 전동 4층부터 최상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완강기는 302동~308동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될 예정임
- 대피공간에는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현관, 발코니, 욕실,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미 없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저수조)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p>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저수조) 설치위치 : 1개소(지하주차장 301동 내 주민회의실 동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함</li> <li>•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li> <li>•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li> <li>•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및 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li> <li>•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li>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301동)</li> <li>• 단위세대 설계부하용량은 46㎡형은 4,380VA이며, 55㎡형 4,650VA임</li> <li>•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li> <li>•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복도식인 46㎡A,B 타입은 복도에 면해있는 침실2와 주방 창호 측면부에 1개소씩 설치됨.</li> <li>• 홈네트워킹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며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 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놀이터CCTV, 차량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함</li> <li>•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됨</li> <li>•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li> <li>•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설치위치: 지하주차장 301동 내 관리사무소 북측)</li> <li>•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li> <li>*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li> <li>•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ul>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 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기타 다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수서역세권 A3BL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20-82-09373)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 (110-81-07293)

##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룩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단, 구조적 문제에 따라 설치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 신청방법 및 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11. 무량판 관련 보강공사 현황

- 본 단지의 아파트 세대에는 공동주택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벽식구조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주차장에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와 관련하여 구조보강공사 완료 후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해 구조 안정성 및 구조 보강공사 적정성 검토 등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점검을 '23.11.09.~ '23.11.10. 동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등급 "A(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 \*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불량)
- 본 단지는 공고일 현재 이상없음을 알려드리며, 정밀안전점검결과 보고서는 향후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무량판 관련 안내사항 문의처 : LH 위례사업본부 주택품질팀 ☎.031-786-6397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li> <li>· 인터넷 - 마이홈포털 (<a href="http://www.myhome.go.kr">http://www.myhome.go.kr</a>)</li> <li>-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a href="http://blog.naver.com/happyhouse2u">http://blog.naver.com/happyhouse2u</a>)</li> <li>- LH 홈페이지 (<a href="http://www.lh.or.kr">http://www.lh.or.kr</a>)</li> </ul>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LH 청약플러스(<a href="http://apply.lh.or.kr">http://apply.lh.or.kr</a>)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li> <li>·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li> </ul>
관할 지사 약도	
도로명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삼성동 141번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http://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5.3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